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고,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등의 명칭 등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및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 필요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란의 1. 중앙정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 ⑪ 발주자분류 항목의 정부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를 각각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주 및 별표 3 비고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입주자격란의 다목 및 라목, 별표 4 제2호나목 입주자격란 9)부터 11)까지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 3), 4) 및 8) 입주자격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분류란의 (1. 중앙정부) 및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란의 (1. 중앙정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와 수수료 항목 및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와 수수료 항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Operated by 란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제10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

고, 제96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6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란의 1. 중앙행정기관 및 별지 제15호의7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란의 1. 중앙행정기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 4. 계약조건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조(「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9호,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9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 안내문안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인 증 수수료 항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16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1항제27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며, 제39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5.11.>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5.11.>
②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u>산</u> <u>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국토교통	② ----- ----- <u>기</u> <u>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	-----
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	-----
치하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u>	----- <u>기후에너지</u>
<u>부장관</u> 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u>환경부장관</u> -----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	-----
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	-----
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생략)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 ----- ----- ----- ----- ----- -----.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 ----- ----- ----- -----
가. (생략)	가. (생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u>여성가족부장관</u>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나. ----- <u>성평등가족부장관</u> ----- -----
다. (생략)	다. (생략)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략)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등록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③ ----- ----- ----- ----- <u>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u> -----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u>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환경부장관</u> 이 요청하는 업무	7.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u> 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 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 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 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 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u>환경 부장관</u> 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한다.	⑥ ----- ----- -----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 ----- ----- ----- ----- ----- ---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② (생략)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환경부장관</u> 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 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 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⑤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 관과 <u>환경부장관</u> 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u>환경부장관</u> 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 ----- ----- ----- -----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생략)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 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 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⑥ ----- ----- ----- ----- ----- ----- -----기후에너지환경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u>부 장관</u> -----.
제8조(인증기준 등) 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준 등) ①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생략)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② ----- ----- ----- <u>기후에너지</u>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u>환경부장관</u>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생략)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②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생략)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1.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 ④ (생략)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⑤ -----

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
은 제6조제2항(제9조의2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인
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
가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
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illegibl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② _____

환경부장관 _____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
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환경부장관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 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④ _____

_____기 후에너지환
경부장관_____.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 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u>환경부장관</u> 은 인증운영위원회 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 囑)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 임 및 해촉)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방송·통신시설) 이 절에 서 “방송·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u>방송통 신위원회</u> 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 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1. ~ 3. (생략)	제76조(방송·통신시설) ----- ----- ----- ----- <u>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u> ----- ----- -----. 1. ~ 3. (현행과 같음)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 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 호의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 장관</u> 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계 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 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9. (생략)	제96조(문화시설) ----- ----- ----- ----- <u>산업통상부 장관</u>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생략)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② ----- ----- ----- -----.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u>여성가족부장관</u>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성평등가족부장관</u> ----- -----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 ----- ----- ----- -----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u>통계청장</u> 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가. ----- ----- ----- ----- ----- ----- ----- <u>국가데이터처장</u> ----- ----- ----- -----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대상) ----- ----- ----- ----- -----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 ----- -----.
1. ~ 5. 삭제<2021.8.23.>	1. ~ 5. 삭제<2021.8.2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생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현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8.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요청하는 업무 9. 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생략)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행과 같음) ②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③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u>기후에너지</u> <u>환경부장관</u>----- 9.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④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
---	---

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⑥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⑦ ~ ⑧ 삭제<2024.12.23.>	⑦ ~ ⑧ 삭제<2024.12.23.>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② (생략)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과의 협의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	③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

서 갱신할 수 있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 ----- ----- -----.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u>산업통상자원부</u> 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 ----- ----- ----- -----

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2.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3. 그 밖에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인증등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건축물	3. ----- ----- ----- ----- ----- ----- <u>기후에너지</u> <u>환경부장관</u>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삭제<2024.12.23.>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삭제<2024.12.23.>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	⑨ -----

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생 략)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2024.12.23.>	② 삭제<2024.12.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③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① (생 략)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②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 ----- -----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 ----- <u>기후에너지</u> ----- ----- -----.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⑤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u>산업통상자</u>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u>기후에너지환</u>

<u>원부장관</u> 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u>경부장관</u> ----- ----- ----- ----- -----.
② (생략)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u>기후에너지</u> ----- <u>환경부장관</u> ----- ----- -----.
④ ~ ⑤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⑥ -----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8.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	마.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 법 제38조의7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 ----- ----- ----- ----- -----.
1. (생략)	1. (생략)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u>통계청</u>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2. ----- ----- ----- ----- <u>국가데이터</u> <u>처장</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